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6509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650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3. 30 선고 2021가소951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담당변호사 정익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철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3. 30. 선고 2021가소951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69,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 C은 2016. 3. 14.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후 원고의 계좌에서 2016. 4. 20.부터
2019. 2. 1.까지 합계 2,767,35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2016. 5. 5.부터 2019. 7. 9.까지 합계 14,302,000원을 원고의 사무와 무관하게 지출하여
위임계약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이 원고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당시 대표자 명의로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해 C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5,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의
계좌에서 ① 2016. 4. 20.부터 2019. 2. 1.까지 합계 2,731,350원¹⁾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2016. 5. 5.부터 2019. 7. 9.까지 합계 14,30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2,731,35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 것과 C이 원고의 사무와
무관하게 14,302,000원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 대표자인 D2) 이 2019. 1. 31.경 C을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에서 2019. 3. 28.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표현대리책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피고가 C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든가 외관을 방치하는 등의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C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닌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하며 취득한 부당이득에 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를 C의 사용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원범, 판사 김지연

1) 원고가 2023. 3. 22.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액 중 순번 6. 2017. 1. 14. 신문광고비로 사용한 36,000원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 D은 2019. 7. 30.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